

#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0,329,314	17,409,879
일반회계	564,564,164	16,936,925
특별회계	15,765,150	472,955
기타특별회계	15,765,150	472,95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68,190	104,046
의료급여특별회계	1,209,999	36,300
자활기금특별회계	1,575,608	47,268
주택사업특별회계	26,991	81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5,847	2,875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16,521	6,49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631,992	18,96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4,815,030	144,451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40,000	1,20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676,420	80,2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01,700	27,051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106,852	3,20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 성립 전 승인 후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